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
제안년월일 : 1997. 8.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
위 원 장

1. 제안이유

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·조사활동을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〔별표1〕을 정함. (안 제9조의 제4항)

3. 참고 법령

○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
○ 형사소송법

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4항중 "5백만원 이하"를 " 〔별표1〕 의 기준에 의한"으로 하고 제5항중 " 〔별표1〕 "을 " 〔별표2〕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